

2016년도 제 4차

(2016. 11. 07.)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세 한 대 학 교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2016년도 제 4차

회의소집 통보일	2016. 11. 01
의원정수 11명	참석의원 6명

1. 일 시 : 2016. 11. 07. 11 : 00
2. 장 소 : 대학본부 3층 회의실
3. 참 석

구 분	직 명	성 명	비 고
참 석	의 장	안종기	
참 석	부 의 장	류승희	
참 석	의 원	박희석	
불 참	의 원	이봉숙	
불 참	의 원	박상진	
참 석	의 원	전노선	
참 석	의 원	박장현	
참 석	의 원	강창규	
참 석	의 원	정상문	
불 참	의 원	김 응	
불 참	의 원	오정욱	

4. 회의안건

가. 학칙 개정 건.

5. 회의내용

안종기 의장 :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

서명		서명		서명	
----	---	----	---	----	---

씀을 전합니다.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 4차 세한대학교 평의원 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학칙 개정 건입니다. 본안에 대해서는 교학처 양시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. 양시경과장은 학칙 개정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양시경과장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해 설명하다.)

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가. 교육부의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에 따라 집단 활동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

나 .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만 가 능하였던 것을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, 학생회 활동, 학과 행사,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(제71조의2 신설)

나.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시 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함(제47조제1항)

3. 개정학칙 변경안

○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, 학생회 활동, 학과 행사,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(제71조의2 신설)

○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시 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함(제47조제1항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서명	강창욱	서명	김민준	서명	신승자
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4. 학칙 신규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7조 (전(부)과) ① 전(부)과는 『고등교육법』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<u>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</u> 허용 할 수 있다. 단, 재학 연한과 상관없이 전(부)과를 희망하는 경우 재이수 신청에 의해 해당학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(부)과의 시행 시기와 허용범위, 절차,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71조의2 신설</p>	<p>제47조 (전(부)과) ① 전(부)과는 『고등교육법』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<u>제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</u> 허용 할 수 있다. 단, 재학 연한과 상관없이 전(부)과를 희망하는 경우 재이수 신청에 의해 해당학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제71조의2(집단활동) 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, 학생회 활동, 학과 행사,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담당교수와 학생대표는 연대 책임을 지며,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·폐쇄·재정지원 중단·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안중기 의장 : 양시경과장으로부터 학칙 개정(안)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.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이사들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-

류승희 부의장 : 학칙 개정(안)에 동의합니다.

안중기 의장 : 학칙개정(안)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?

전 의 원 : 없습니다.

안중기 의장 :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학칙개정(안)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회의 결과 오늘 회의록에 간서명 하실 의원 세분을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.

정상문 의원 : 오늘 회의록에 간서명하실 분은 박장현의원, 강창규의원, 전노선의의원

서명	강 창 규	서명	박 장 현	서명	전 노 선
----	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

세 분을 추천합니다.

안종기 의장 : 의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?

전 의 원 : 동의합니다.

안종기 의장 : 그럼 회의록 간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장현의원, 강창규의원, 전노선의
원 세분으로 하겠습니다.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
회의록이 정서되면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6. 의결사항

- 학칙 개정(안)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.

위 사 실 을 확 인 함.

2016. 11. 07.

서명	강 창 규	서명	전 노 선	서명	박 장 현
----	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

의 장 안 종 기



부위원장 류 승 희



의 원 이 봉 숙

인

의 원 박 희 석



의 원 박 상 진

인

의 원 전 노 선



의 원 박 장 현



의 원 강 창 규



의 원 정 상 문



의 원 김 응

인

의 원 오 정 욱

인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16. 11. 07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안 종 기

서명		서명		서명	
----	---	----	---	----	---